

한양대학교 4단계 BK21사업

「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
HY-GRIP 교육연구단」 운영 규정

교육연구단장 : 최 창 규

「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HY-GRIP 교육연구단」 운영 규정

2021.02.01. 제정

2024.02.01. 개정

2025.01.06.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사업단 목적) 본 사업단은 ‘미래 선도형 크로스컷팅(cross-cutting) 사고 배양을 통한 글로벌 지역개발 연구중심 대학원’으로 도약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초연결 사회를 선도하는 통섭적 지역개발 미래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다.

제2조(사업단규정 목적)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「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HY-GRIP 교육연구단 (이하 “교육연구단”이라 한다)」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기간) 총 사업기간 2020.09.01.~2027.08.31.(1~8차년도)이며, 개별 사업년도는 각 차년도마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로 한다. 단, 1차년도는 2020.09.01.~2021.02.28.이며, 마지막 8차년도는 2027.03.01.~2027.08.31.까지로 한다.

제 2 장 참여교수에 관한 지침

제4조(목적) 본 규정은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선발 및 교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참여교수의 선정)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전일제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로, 소속은 본 대학 도시대학원의 도시·지역개발경영학과 이어야 한다.
- ② 참여교수는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(6개월 이상) 등으로 국내에 없을 경우와 6개월 이내 병가일 경우 연구단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(논문지도 포함)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.
- ③ 참여교수의 수는 7명(사업계획서 제출 기준)을 유지하고, 아래 제6조(참여교수의 교체 기준)에 따라 참여교수를 교체 및 추가할 수 있다.

제6조(평가)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바는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으며, 평가항목은 연구영역을 우선시한다. 참여교수의 평가는 ‘제 6장 성과급 집행’의 [표 5]를 기준으로 한다.

제7조(참여교수의 교체 기준)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

- ①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제4조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②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
- ③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④ 참여교수 교체시 4단계 BK21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하며, 학교에 공문을 통해 통보한다.

제 3 장 참여대학원생에 관한 지침

제8조(목적) 본 규정은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9조(참여대학원생 자격)

-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.
※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 가입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참여대학원생은 선발과정을 거쳐 4단계 BK21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③ 참여대학원생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- ④ 구체적인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은 [표 1]을 기준으로 한다.
- ⑤ 참여대학원생 중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확인될 경우, 해당 인원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조치한다.

제10조(연구 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)

-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,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00만원 이상
 - 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60만원 이상
 - 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30만원 이상
- ②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학기별로 참여대학원생의 지원을 받아 참여대학원생 평가기준 [표 2]와 연구계획서[첨부1], 연구실적을 종합하여 지도교수가 평가 선발한다. 단, 석사 1학기 및 박사 1학기 지원자는 학부 및 석사 성적과 연구계획서를 합한 점수로 평가한다.
- ③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되며, 장학금 지원기간 중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상실된 이후부터 일할 계산 정산하여 환수된다.
- ④ 지원대학원생은 학기별 석사 15명 내외, 박사 10명 내외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각 과정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[표 1]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

구분	자격 기준	비고
1) 소속	-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의 지도학생	- 사업기간 중 휴학생 및 제적생은 참여대학원생 불인정
2) 연한	- 입학 후 석사 2년 이내 - 입학 후 박사 4년 이내 - 석·박사통합과정 6년 이내	
3) 전일제	-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교육연구단의 교육·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	- 교육연구단장 승인 시 학기당 6학점 이내의 시간 강사 가능

[표 2]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평가기준

구분		평가점수(점)		비고
		주저자	공동저자	
논문 (15)	국제 전문학술지	9	5	1건당 4.5점/2.5점
	국내 전문학술지	6	3	1건당 3점/1.5점
학술발표 (10)	국제학술발표	6	3	1건당 3점/1.5점
	국내학술발표	4	2	1건당 2점/1.0점
학업역량 평가 (20)	교과학점*	20		20점/4.0이상, 15점/3.5이상, 10점/3.0이상
연구계획서 (55)		55		정성평가

* 신입생은 학부 및 석사과정의 평점평균, 박사수료생은 박사과정의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함

<장학금 기준>

-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. 단,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60점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

과정	월 지급액 범위 (단위 : 원)
석사과정	100만원
박사과정	160만원
박사수료	130만원

제 4 장 신진연구인력에 관한 지침

제11조(신진연구인력 선발)

- ①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연구와 계약교수로 구분하여 선발하며, 본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따른다.
- ② 박사후연구원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.
- ③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.

- ④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 및 교육에 전념을 원칙으로 하며, 채용기간 중 이중소속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⑤ 신진연구인력의 선발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신진연구인력 평가기준 [표 3]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차 선발한 후, 교육연구단장의 최종 면접평가로 선발한다.
- ⑥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최소 12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며, 그 기간 동안 우수한 연구실적 보유 시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 할 수 있다.

[표 3] 4단계 BK21 신진연구인력의 평가기준

구분			평가점수(점)	
			주저자	공동저자
논문	국제 전문학술지	Q1 저널	45	28
		Q2 저널	30	15
		그 외	15	8
	국내 전문학술지	10	5	
사업 수행 기여도	발전 가능성		50	
	연구단과의 적합성		25	
	성실성 및 열정		25	

* 위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한다.

제12조(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및 지원)

- ①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월 총 30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 (4대보험, 퇴직금 포함)
- ②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보장하고, 연구공간 및 연구지원을 한다.
 1. 국내 및 국외 학술대회 등록비 및 체재비 지원
 2. 국내·외 학술지 게재에 필요한 경비(심사료, 게재료 등) 지원
 3. 강의 기회 제공 또는 주당 6시간 이내의 타 학교 출장 허용

제 5 장 교육과정개발비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집행

제13조(교육과정개발비)

- ① 교육과정개발비는 융·복합적 사고를 갖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교재개발비 또는 사례조사비를 지원한다.
- ②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과제를 수행했을 시,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산학협력활동 지원비)

- ① 산학협력활동 지원비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논문게재료 및 국내 학회·세미나 참가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
- ② 또한 창업·취업지도·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를 지원한다.

제 6 장 국제화경비 및 교육연구단 운영비 집행

제15조(국제화경비)

- ① 국제화경비는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 단, 편성 예산 금액에 따라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.
- ② 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은 4개국 이상 참여,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단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)이다.
- ③ 국제화경비 지원범위는 국제학술대회 등록비, 항공료 및 여비를 지원한다. 지원금은 한양대 국외여비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한다.
- ④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지원을 받아 교육연구단 평가기준 [표 2, 3]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우선으로 선발, 지원한다.

제16조(교육연구단 운영비)

- ① 국내 여비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국내학술대회참가에 필요한 여비로 한정하여 지원한다. 단, 편성 예산 금액에 따라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.
- ② 학술활동지원비는 전문가초청강연료, 도서 등 문헌 구입비, 국내외 정보 수집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

제 7 장 성과급 집행

제17조(참여교수)

- ① 성과급은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의 교육연구단 운영기여도(70%)와 연구실적(30%)을 종합하여 국고에서 차등 지급한다.
- ② 해당 사업기간에 발생한 참여교수의 연구실적과 교육연구단 수행 기여도 평가는 [표 4]에 준하여 교육연구단장이 평가한다.
- ③ 성과급 지급액은 기여도(평가기준)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(BK21 4단계 사업관리 운영규정(1인 600만원/년)에 따른다. 1차년도 사업기간(6개월)에 따라 1/2금액으로 지급한다.)

[표 4] 4단계 BK21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 수행 기여도 평가기준

구 분	세부 평가 항목	평가 점수(기여도)	비고
연구부문 (30)	국제 전문학술지 SSCI/SCI/SCIE급, A&HCI, SCOPUS	20	게재 논문 건당 3점(최대 20점)
	국내 전문학술지	10	게재 논문 건당 1점(최대 10점)
연구단 운영 부문*(70)	회의 및 행사 참여도	상·중·하	교육연구단 회의 및 행사 참여도
	업무지원		업무 지원

*연구단 운영부문은 교육연구단장이 정성평가 실시

제18조(참여대학원생)

- ①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은 학위 수여 시까지 [표5]를 참고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(해당 년 차의 달성점수를 기준으로 함)
- ② 국제 저명 학술지 중 IF 5 이상 또는 JCR 상위 10%이내 학술지에 주저자로 게재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성과급 외에 특별 성과급을 [표6] 기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③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주저자로 수상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성과급 외에 특별 성과급을 [표6] 기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. 단, 최대 수상실적은 2건 이하로 한정되어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특별 성과급은 지원받는 연구 장학금의 수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에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특별 성과급 금액을 최종결정한다.

[표 5]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 평가기준

구 분	세부 평가 항목	가중치	비고
논문부문* (40)	국제 전문학술지	0.7	
	국내 전문학술지	0.3	
학술대회 부문* (20)	국제 학술대회	0.6	
	국내 학술대회	0.4	
사업단 기여도 부문**(40)	회의 및 행사 참석	상·중·하	성과회의 참석 (10회 이상 : 10점, 5-9회 : 5점)
	업무지원		연구단 세미나 참석 (5회 이상 : 5점, 3-5회 : 3점)
			성과목록 관리 및 기타업무(상:15점, 중:7점, 하:0점)

* 공저자의 경우, 가중치 값의 1/2 적용. 논문 성과는 세부 기준별 최대 2편, 학술대회 성과는 최대 4편까지 인정

** 사업단 기여도 부문은 교육연구단장이 정성평가 실시 (상 : 30점 이상, 중 : 20-30점, 하 : 20점 이하)

<성과급 기준>

평가대상	평가등급 구분	평가점수 (점)	성과급 지급액(만원)
참여대학원생	A	70점 이상	100
	B	50 - 70점	50
	C	30 - 50점	20
	D	30점 미만	0

* 성과급은 사업단 운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[표 6]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의 특별 성과급 기준

구 분	기준	특별 성과급 지급액
논문	국제 저명 학술지 중 IF 5 이상 또는 JCR 상위 10% 이내 학술지에 주저자로 게재 시	100만원
학술발표 대회	국내 학술발표대회 주저자로 수상 시	20만원/건 (동일 혹은 유사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최대 1건 지급)
	국제 학술발표대회 주저자로 수상 시	50만원/건

* 특별 성과급은 사업단 운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제19조(신진연구인력)

- ①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여 [표 7]을 참고하여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성과와 업무수행 실적(사업단 업무 지원, 행사 참여, 대학원생 논문지도 등)이 탁월한 경우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.

[표7] 4단계 BK21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 평가기준

구분	세부 평가 항목	가중치	비고	
논문부문* (70)	국제 전문학술지 (편)	Q1 저널	0.45	
		Q2 저널	0.30	
		그 외	0.15	
	국내 전문학술지 (편)		0.10	
사업단 기여도 부문**(30)	회의 및 행사 참석 (15)	상·중·하	성과회의 참석 (10회 이상 : 10점, 5-9회 : 5점)	
			연구단 세미나 참석 (5회 이상 : 5점, 3-5회 : 3점)	
	업무지원 (15)		보고서 작성 기여도 (상:10점, 중:5점, 하:3점)	
			세미나 진행 기여도 (있는 경우, 5점, 없는 경우, 0점)	

* 공저자의 경우, 가중치 값의 1/2 적용. 논문 성과는 세부 기준별 최대 2편까지 인정

** 사업단 기여도 부문은 교육연구단장이 정성평가 실시 (상 : 20점 이상, 중 : 15-20점, 하 : 15점 이하)

<성과급 기준>

평가대상	평가등급 구분	평가점수 (점)	성과급 지급액(만원)
신진연구인력	A	80점 이상	150
	B	60 - 80점	100
	C	40 - 60점	50
	D	40점 미만	0

*성과급은 사업단 운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제20조(연구단 전담직원)

- ① 연구단 전담직원의 업무역량에 따라 사업년도 단위로 평가하여 연구단 행정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직원에게는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재계약시 물가상승률 + 1% 연봉 인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.

제 8 장 사업 참여 인력의 의무 및 제재

제21조(운영위원회)

-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과 참여교수로 구성된 위원회이며, 교육연구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(위원장)과 4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교육연구단의 모든 결정(신진연구인력 선발, 연구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선발, 국제학술대회 지원 대학원생 선발 등)은 교육연구단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결정된다.

제22조(성과관리위원회)

- ① 성과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교수와 신진연구인력, 참여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된다.
- ② 성과관리 담당 교수가 위원장을 맡으며, 성과관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진행에 관한 사항
 2.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3. 기타 성과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3조(교육연구단장)

-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24조(사업참여교수)

- ① 사업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- ② 사업참여교수는 우수인력확보 및 인력양성에 힘을 쓰며,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제화에 노력한다.

제25조(참여대학원생)

- ① 4단계 BK21 연구 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이 과정별로 사업성과(논문 등)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.
 1. 석사과정 : 국내학술지(KCI) 1편 이상/년, 학술발표대회 2회 이상/년
단, 지원받는 연구 장학금이 월160만원 이상일 경우, 박사과정/박사수료 기준에 따름
 2. 박사과정/박사수료 : 국제저명학술지(SSCI, SCI, SCIE, A&HCI) 1편 이상/년, 학술발표대회 2회 이상/년
- ② 참여대학원생은 산학협력 활동, 국제협력 활동, 해외학자 초빙 세미나 등 교육연구단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 (활동 참여의무 참석횟수 3회/학기별) 의무 참석횟수 미달성 시에는 성과급 지급에 제한이 될 수 있다.

제26조(신진연구인력)

- ① 신진연구인력은 임용 기간 내 뛰어난 연구역량을 발휘하여 사업성과(논문)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며, 매년 국제저명학술지(SSCI, SCI, SCIE, A&HCI) 논문 2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.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업성과(논문)에는 소속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② 4단계 BK21 인건비를 지원받은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기간까지 국제저명학술지 2편을 권장한다.
- ③ 신진연구인력은 본 사업에서 진행되는 사업성과(논문)를 계약기간 완료 전에 교육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참여자가 제출한 사업성과(논문)에 대하여 교육단에서 수정·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27조(명시되지 않은 사항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른다.

[첨부1]

HY-GRIP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연구계획서

성명		학번 / 과정·학기	예> 202400000 / 석박통합 1기
학과	도시·지역개발경영학과	지도교수	
연구주제			
연구내용	<p>(예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구 목적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연구 방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(접근방법)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연구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와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술 <p>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, 1매 이내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.</p>		
수행일정계획	- 6개월 계획을 원칙으로 함		

위 내용은 사실이며, 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HY-GRIP 교육연구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20 년 00 월 00 일

지원자 _____



미래 선도적 지역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
HY-GRIP 교육연구단